

『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5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6월 10일

제1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도모.
-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장기 투자사업 및 지방채 상환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 필요.
-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구미시에서 위탁하는 분뇨 수집·운반업자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.
-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공사 개선사업으로 청소물량이 70%이상 감소함에 따라 분뇨 정화조 수집·운반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해 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 필요.

다. 주요내용

-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차별 평균 7.3% 인상(안 별표 1)
-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을 2014년 8월까지 2년에 걸쳐, 정화조 수수료 18.8%, 분뇨 수수료 9.2% 인상(안 별표 6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하수도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-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.(2013. 3.14)
- 입법예고 : 2013. 4. 5 ~ 4. 25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위원회 의결.(2013. 5.22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□ 본 ‘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 은,

- 하수도 특별회계 누적결함액 발생과, 지방채 상환, 하수종말처리장 증설, 처리구역 관거 정비 등, 장기 투자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,
-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, 구미시에서 위탁하는 분뇨 수집·운반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,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,
- 또한,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인상을 위하여, ‘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’ 심의 시 원안 가결되었음.

□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,

-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, 경북도 市部 중, 도내 평균치 요금이므로, 2013. 8월 고지분부터 평균 7.3%, 2014. 8월 고지분부터 평균 7.3% 인상 하고자 함.
- 또한, 분뇨 및 정화조 처리 수수료는, 2013. 8월분 및 2014. 8월 분부터 2년에 걸쳐, 정화조 청소 수수료 18.8%, 분뇨 수수료 9.2% 인상하고자 함.

□ 검토결과

- 지방공기업법 제22조(요금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에 의거,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합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였으며,
- 분뇨 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하수도법 제41조(분뇨 처리 의무) 규정에 의거,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, 청소 수수료 및 사용료 산정을 2011. 12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한 결과를 토대로, 2006년 대비 26.8%의 인상(안)을 제시하였음.
- 하수도 원가(영업비용) 구성 비용(2011년 기준)비율을 보면, 하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54.93%, 민간위탁금(시설공단) 34.27%로, 원가비용 중 89%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.
- 하수도 사용료도, 2007년 이후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, 누적결함액 437억원 발생과 2013년부터 지방채 상환액 55억원, 하수관거 정비 및 처리장 증설 사업비 등이 계속 요구되는 실정임.
- 금회, 하수도 사용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 인상은,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, 2개 년도에 걸쳐 인상 조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 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